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81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 송옥주·임호선·이원택

윤준병 · 황명선 · 김현정

한정애 • 이수진 • 전종덕

박 정・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하여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 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 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6).

이에 더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 형농수축산식품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을 "임산물·축산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5(식품접객업소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표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 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농 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제12조의6(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로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 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2의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 1.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표시) ①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	
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	
산물· <u>축산물</u> ·수산물 등을 원	<u>임산물·축산물</u>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	
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u>다만, 제조·가공 후</u>	<u><단서 삭제></u>
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	
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	
<u>다.</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조의5(식품접객업소의 유전
	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

<신 설>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임산 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 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 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2조의6(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장이 정한다.

2												_	_	_	_
---	--	--	--	--	--	--	--	--	--	--	--	---	---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생략)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 | 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 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 2. (생략) <신 설>

- 3. ~ 8.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2. ~ 1의5. (생 략)

2. ~ 6. (생 략) ④·⑤ (생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1의4.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 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3. ~ 8. (현행과 같음)

-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 1.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 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한 자
 - 1의3. ~ 1의6. (현행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5까지와 같음)
 - 2. ~ 6.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